[부록 1] 일반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Q&A

Q.1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크게 달라지는 점은?

A 자본시장법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상품의 특성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Q.2 보험상품이나 예금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A 보험상품과 예금상품도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됩니다.(자본시장법 제3조)

Q.3 변액보험상품은 투자성 있는 보험에 해당하는지?

A 변액보험상품이라도 최저보증옵션 등으로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인 경우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3조).

Q.4 주식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해당하는지?

A 주식 거래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며 증권에는 주식, 채권 등 종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뿐 아니라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익명조합의 지분, 기업어음증권 등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거나,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포괄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Q.5 원금보장형 ELS, 원금보장 · 비보장 ELD가 금융투자상품인지?

A ELS는 원금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 규정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므로 금융투자상품입니다. ELD(Equity Linked Deposit)는 예금으로 원금이 보장되므로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없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펀드도 금융투자상품인지?

A 펀드라는 용어는 자본시장법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Q.7 금융투자회사는 무엇인지?

A 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이 영위하는 업무를 경제적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6가지 금융투자업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상기 6가지 금융투자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Q.8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지?

A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현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금융투자'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특정 상호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38조).

Q.9 은행에서도 펀드를 판매하는데 은행도 금융투자회사인지?

A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과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는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등과 같이 금융투자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와 구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겸영금융투자회사로 분류됩니다(자본시장법 제12조, 제22조). 한편 겸영금융투자회사도 금융투자업 영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Q.10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펀드에 가입하는 절차가 복잡해졌다는데 그 이유는?

A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이하 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적합성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본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정보 확인, 설명절차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절차가 종전에 비해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Q.11 HTS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주식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A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 영업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HTS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고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주식의 매수 또는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고 권유 종목의 투자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Q.12 영업직원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매번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A 동일인이라도 투자자금의 성격에 따라 투자목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자권유를 받을 때마다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이미 투자자 정보를 확인한 계좌에서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단기간 내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등과 같이 투자목적 · 재산상황 · 투자경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투자권유시마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최초 투자권유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고객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투자자에게 투자목적 등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자에게도 투자목적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고지토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13 선물 · 옵션, ELW는 매매의 적시성이 중요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매시마다(HTS 포함)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A 파생상품 등(파생상품, 파생펀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HTS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HTS 시스템 매매 이전에 계좌개설 단계에서 고객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후 매매시마다 정보를 재확인하는 문제는 전술한 계속적인 주식 거래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Q.14 온라인상에서 투자자가 직접 펀드(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제외)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위험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A 금융투자회사가 온라인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Q.15 기존에 가입한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또는 환매를 문의하는 경우에도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A 투자자의 문의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시황설명 등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투자권유가 아니므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추가매수 또는 환매를 권유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Q.16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펀드, 파생상품등)은 거래할 수 없는 것인지?

A 펀드, 파생상품등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①거래를 거절하거나 ②투자자가 거래를 원할 경우 부적합 사실 및 위험 등을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 거래할 수 있습니다.

Q.17 투자권유대행인이 무엇인지?

A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의 체결 권유를 대행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전문인력시험(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투자권유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Q.18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는지?

A 투자권유대행인도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적합성원칙).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본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설명의무).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Q.19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사의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한 융자(대출)가 불가능한지?

A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방법을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등을 통해 주식 등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의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대출 만기 이전까지는 종전 증권거래법에 따라 거래가 유효하므로 중도 상환할 필요는 없으며 만기전이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뒤 타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0 신용공여 이용시 담보증권의 평가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신용공여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요청되는 추가담보의 평가방법을 기존의 대용가격기준에서 원담보와 같이 시가평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통상 대용가 평가는 시가대비 70%~8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가로 적용할 경우 담보가치가 상승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Q.21 신용공여 이용시 담보부족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임의상환 방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A 금융투자회사는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지체없이 고객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점은 종전과 동일하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고객과 약관 등을 통해 사전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추가담보의 요구 및 징구 없이 필요한 수량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회사의 선택적 사항으로 모든 증권사가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회사별로 이러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비교한 뒤 사전합의에 대한 확인후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